



## 헌 법 · 민 법 · 형 법

### 【 편집자 주 】

판례와 학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법학과 법률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도 같아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학설의 대립 못지 않게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합격이 최대의 목표인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집은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개되는 판례는 2011년도의 중요판례만을 정리하여 놓았다. 바쁜 중에도 2011년도의 중요판례를 정리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一讀을 권한다.

### 헌 법 / 권순현

## I. 헌법총론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법률조항 중 '비방' 부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을 위한 것이고, 후보자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비방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10헌바53).

2.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누구든지 단체의 자산이나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최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조항은 단체의 자금력을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왜곡과 선거의 공정 저해를 방지하며,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기부로 인한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2.28. 2008헌바89).

3.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과 수단, 기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12.28. 2010헌마79).

4.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중 '○○시 마 선거구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할 것인데, '○○시 마' 선거구의 경우 이와 같은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12.28. 2010헌마401).

5.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지역선거구자치구의회의원'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부당하게 소환될 위험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음에 반하여,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은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이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형량도 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8헌마355).

6.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있어서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힘들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대거나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받는대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제도나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위 규정이 청구인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9헌마286).

7.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공개 대담연설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와는 달리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인물선거의 성격을 갖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정당선거의 성격을 갖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그 특성이 상당히 다르므로, 후보자 개인의 홍보가 추가 되는 선거벽보의 철폐나 선거운동효과가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거나 추천정당이 비례대

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정당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 선거의 특성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재 2011.03.31. 2010헌마314)

8.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 하여금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자신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인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재에 관하여,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경미한 선거범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당선 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제재를 자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어서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효과는 동일할 것이므로 당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들에 대하여 선거범죄 방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부담문제를 고려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4.28. 2010헌바232).

9.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소정의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종사자에게 운영비 등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 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헌재 2011.04.28. 2010헌바473).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 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인해 객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협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04.28. 2010헌마474).

11.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분담금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분담금과 도시계획세는 그 목적 또는 부과 대상의 달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중복 부분이 공제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이 중복부과로 과도한 부담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여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04.28. 2009헌바167).

12.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선거기획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및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5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무원 등이 선거기획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농협 임·직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기획행위를 한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농협 임·직원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기획행위자에 비하여 형사상 불리하게 차별받는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선거기획행위가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기획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수범자가 처벌받는 행

위를 예측할 수 없거나 수사 및 재판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우려가 없다(헌재 2011.04.28. 2010헌바339).

1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지지율이 인정되는 후보자에게만 대담·토론회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담·토론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 균등보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5.26. 2010헌마451).

1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5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중 ‘기초회의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중선거구제인 선거에서 기탁금반환의 기준을 소선거구제인 다른 선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출 수도 있으나,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국의 불안정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기탁금반환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던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11.06.30. 2010헌마542).

15.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우리 선거의 현실,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좌제 금지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11.09.29. 2010헌마68).

## II. 기본권론

1.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009. 10. 29. 2009헌라8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위 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침해된 위 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위 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각하의견을, 재판관 1인은 기각의견을, 재판관 4인은 인용의견을 각 개진한바, 각하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한하여는 기각의견과 견해가 일치하고, 각하의견과 기각의견을 합하면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가 충족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2.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녀간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병력자원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06헌마328).

3.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PC방 시설 및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 재산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는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을 하여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0.02.25. 2008헌가20).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11.25. 2010헌가88).

5.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9조 중 '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구속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 사유 심사 시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거시함으로써 구속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헌재 2010.11.25. 2009헌바8).

6.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1.25. 2009헌바27).



7. 소환된 증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 증인 등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1.25. 2009헌바57).

8.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방식을 통한 대마의 사용은 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11.25. 2009헌바246).

9. 기관력제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는가? (★)

☞ 기관력은 후소의 모든 영역에 한정 없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여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과 판단을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송법상 재판 당사자는 중국판결에 대하여 미확정의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결경정제도를 두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예다가 기관력 제도가 없을 경우의 법적 불안정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판결의 패소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09헌바250).

10. 공무원이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과실범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 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2010.11.25. 2010헌바93).

1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로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그 적용의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반사적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여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2010.11.25. 2010헌바253).

12.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5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고등교육법 제51조는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이외에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과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1.25. 2010헌마144).

13. 서울시 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일자를 일요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독교를 믿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일요일로 시험일자를 지정한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수험생들을 차별대우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확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10헌마199).

14.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12.28. 2008헌마157).

15.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범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헌재 2010.12.28. 2009헌가30).

16. 아동복지법 제43조 본문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12.28. 2010헌가94).

1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과 수용대상 토지를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조항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8헌바57).

1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는 재판청구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12.28. 2009헌바20).

19.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충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12.28. 2009헌바258).

20.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특례대상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 한정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반하는가? (★)

☞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의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9헌바400).

21.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12.28. 2009헌바410).

22.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등기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적 권리자들까지 매도청구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현행 민법상의 등기성립요건주의와 조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도청구의 예외대상을 선정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의 건설·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마저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도청구의 예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10헌바219).

2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재 2010.12.28. 2008헌마527).

24.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침해받는 재건축 불참자의 사익은 노후·불량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8헌마571).

25. 위헌확인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  
 되 3개월의 열람기간 제한과 같은 시간적 제약을 둬으로써 행정적인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등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공익과, 청구인  
 과 같은 정보공개 신청인이 3개월 동안만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약을 받음으로써 정보접근이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침해를 비교하여 형  
 량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  
 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9헌마  
 466).

26.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이유로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가? (★)

☞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  
 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  
 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  
 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  
 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  
 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  
 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2.24. 2008헌바56).

27.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행위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2.24. 2009헌바13).

28.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위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02.24. 2008헌바40).

29.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담보 채권자는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과 그 위반시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양도담보 채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04.29. 2008헌바118).

30.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기술적, 세부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조세평등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은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02.24. 2009헌바11).

31.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 및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 가족제도의 보장 및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상속과 관련된 재산권과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도 침해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2.24. 2009헌바89).

32.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의 상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조항은 재산세의 상한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재산의 현황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의 사정변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그대로 상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직전연도의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항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헌재 2011.02.24. 2009헌바289).

33.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법상의 보상결정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을 벗어나 청

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2.24. 2010헌바199).

34.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외’ 강제동원자만을 의료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2.24. 2009헌마94).

35.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이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수형자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운동화착용 불허 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2.24. 2009헌마209).

36.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에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균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균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계간’은‘추행’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이 되며,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군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1.03.31. 2008헌가21).

37. 2011년 3월 31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 친일재산을 그 취득 원인 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1. 입증책임의 분배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오래 전에 취득된 친일재산을 국가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반면 재산의 취득자측은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친일재산 추정 규정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바, 친일재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우리 헌법 전문의 내용에 비추어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재산귀속의 대상을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2011.03.31. 2008헌바141).

38.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47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1. 구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범자가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이미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최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위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명령에 대한 복종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9헌가12).

39.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 등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 95조 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 되는가? (★)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특정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1.03.31. 2009헌가22).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위헌소원에서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중 환매권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법정의견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과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환매권 행사기간의 제한은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03.31. 2008헌바26).

41.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정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법률조항들이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위 법률조항들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후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03.31. 2008헌바111).

42.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에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9헌바309).

4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9헌바319).

44.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하여 피고인, 검사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0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3.31. 2009헌바351).

45.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중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에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적 근거는 비교적 미약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속에 부동산 자체의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만을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03.31. 2009헌바399).

46.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중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관계법령,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의 형상을 사실상 변형시키고 또 그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은 제재수단의 선택 내지 법정형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과잉금지원

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03.31. 2010헌바86).

47.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시험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이므로, 이를 위하여 시험문제와 정답, 채점기준 등 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사전에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3.31. 2010헌바291).

48.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1.03.31. 2009헌마617).

49.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 20522호 기소유예처분(원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마294결정으로 취소되자 위 사건을 재기한 후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를위반(조세)방조 등으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헌재 2011.03.31. 2010헌마312).

50.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범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1.04.28. 2010헌가66).

5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시설의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시 수선보수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임대사업자가 받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혜택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임대사업자를 일반 분양주택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건축업계의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수범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층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04.28. 2009헌바37).

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러한 단체의 위험성 때문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일반 범죄의 예비·음모죄 등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거나 무거운 징역형을 최하한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4.28. 2009헌바56).

53. 조합임원에게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6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는 입법취지, 공개대상정보, 청구권자, 청구의 상대방, 공개절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공무원과 달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4.28. 2009헌바90).

54.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1.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개시될 당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문제된 사실관계가 발생한 이후에 법개정이나 새로운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과거와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은 문제된 사실관계가 발생할 당시에 형성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사후 법률개정 혹은 해석변경 등으로 그 적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4.28. 2010헌바114).

55.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은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존재한다(헌재 2011.04.28. 2009헌마610).

56.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작업인부 17명이 부동산 명도집행을 위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행당사자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행위가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1.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

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4.28. 2010헌마576).

57.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헌재 2011.05.26. 2011헌가16).

58.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누범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만을 누범으로 하고 있으며, 그 형도 장기만을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므로 전범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 뿐, 전범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다시 처벌받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5.26. 2009헌바63).

59.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여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적절한 시점보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별법(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에서도 개별 개발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계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5.26. 2009헌바296).

60.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

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헌재 2011.05.26. 2010헌바204).

61.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청구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접견불허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

☞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62.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7항, 제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태권도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제정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을 통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기원을 포함한 여러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05.26. 2010헌마183).

63. 형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형사재판의 경우는 부당한 구금의 장기화 방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의 멸실이나 왜곡 방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달성을 위한 형벌권의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민사재판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의 절반 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05.26. 2010헌마499).

64.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비하여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 결국,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5.26. 2010헌마775).

65.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1.06.30. 2008헌바166).

66.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청구인들이 2009. 6. 3.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바, 서울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필요성이 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된 것은 침해를 최소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1.06.30. 2009헌마406).

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개정법을 부칙 제2조가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일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 한정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수혜자 한정 기준으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지원 여부에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1.06.30. 2008헌마715).

68.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 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 174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이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06.30. 2010헌가86).



69.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경과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06.30.2009헌바55).

70. 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행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1.06.30. 2009헌바199).

71.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들의 경우, 그 이득액의 기준은 50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위 법률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으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의해 제시된 권고 형량의 범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데서부터 제시

되고 있다는 사정(수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수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9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을 규정하였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11.06.30. 2009헌바354).

7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된 이상, 이를 징수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1.06.30. 2010헌바375).

7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 중 “거주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법인은 통상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억제할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대상을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06.30. 2010헌바430).

7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면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면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당연지정되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11.06.30. 2008헌마595).

75.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의 주민등록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1.06.30. 2009헌마59).

76.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실기시험)의 차이, 그리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1.06.30. 2009헌마709).

77.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에는 막

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군조직과 시설체계 하에서의 여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기강해이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06.30. 2010헌마460).

78.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기 위해서 만 16세를 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정규 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반사적·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단축된 기간으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방법도 있어, 만 16세 미만의 자들에게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06.30. 2010헌마503).

79.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07.28. 2009헌바267).

80.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의 방지라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에 반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는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7.28. 2010헌바115).

81.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인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07.28. 2008헌바13).

82.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제2문 및 제3문 중 각 ‘제5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1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지표조사·발굴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조사·발굴비용 액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의무가 부과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07.28. 2009헌바244).

8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부분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중 ‘계속근로기간 1년’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퇴직급여제도 이외에 국민연금제도나 실업급여제도 등 퇴직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사회보장적 제도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1.07.28. 2009헌마408).

84.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 최소화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평등원칙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1.08.30. 2007헌가12).

85.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는 이상, 위 조항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1.08.30. 2009헌바42).

8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08.30. 2009헌바128).

87.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 상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조항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8.30. 2009헌바245).

88.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우리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및 전문과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증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이라는 위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1.08.30. 2006헌마788).

89.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비교집단이 되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종사자를 다른 업종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8.30. 2008헌마477).

90. 일정 해역 내에서 대계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별표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계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별지1 부도 3)'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정 해역 내에서 연안통발어법에 의한 대계 포획만을 금지함으로써 자망어업인과 통발어업인을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어선이나 어구 등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08.30. 2009헌마638).



9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고자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주체를 제한한 것으로,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고, 명함교부 또는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11.08.30. 2010헌마259).

92.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업무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1.09.29. 2010헌가93).

9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추행'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9.29. 2010헌바66).

94.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09.29. 2010헌바188).

95.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으로 '주소의 자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위 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유언의 요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9.29. 2010헌바250).

96.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9.29. 2010헌바346).

97. 고용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변경을 허용한 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 현재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지만(재판관 5인의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재판관 4인의 의견)(헌재 2011.09.29. 2007헌마1083).

9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들에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09.29. 2010헌마85).

99. 독거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1.09.29. 2010헌마413).

100. 청구인이 노점에서 의류 1점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절도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

☞ 청구인의 절도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황상으로도 절도범의를 쉽사리 인정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헌재 2011.09.29. 2009헌마432).

### III. 통치구조론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인,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유족의 헌법소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충족하는가? (★)

☞ 제주4·3특별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로서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마146).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제27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외통위 회의에 대하여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권한의 침해가 인정하였는가? (★)

☞ 피청구인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전체 외통위 회의를 개의하여 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행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 원칙 및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위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헌재 2010.12.28. 2008헌라7).

3.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반대로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나아가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헌재 2011.08.30. 2009헌라7).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제9공구 매립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지역에서 자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관할권한의 확인을 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권한의 침해가 있었는가? (★)

1. 이 사건 계쟁지역에서의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1.09.29. 2009헌라3).

5.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경쟁업체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범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1. 피청구인이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09.29. 2010헌마539).